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4716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피 고 ○○광역시 ○○청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7,132,799원
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발포제의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광역시 ○구 B에 본점을, ○○도 ○○시 및 ○○시 등에 3개의 제조시설을, 인도네시아, 중국 및 대만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273,056,76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투자의 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액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1,914,820,406 원 중 1,533,194,922원(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 공제액'이라 한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4조 제1항 이월공제규정에 따라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2014년 이전 발생한 이월세액공제	공제내역
		2014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1,784,285,386	1,440,959,90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구 조특법 제26조)	130,535,020	92,235,020
계	1,914,820,406	1,533,194,922



라. 한편,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종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지방소득세'로 바뀌고, 과세표준이 종전 '법인세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전환되었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직접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규정이 없자, 원고가 법인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¹⁾
2014년 ²⁾	16,914,936,528	336,298,730	394,544,009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개정 지방세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가세방식에서 독립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이 줄어들어 감경될 수 있었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감경되지 못하자, 피고에게 종전 감경할 수 있던 분만큼 법인지방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다며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개정 지방세법 및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별

1) 지방소득세 가산세 58,245,279원(과소신고가산세 10,318,58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7,926,693원)이 포함되어 있다.

2)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과세표준 증액결정에 따라 2019. 12.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금액이다.



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6. 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4.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은 자기집행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 및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감안하여 종전의 규정, 즉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세액공제·이월공제규정 및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에 정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부가세방식이 적용되어 원고의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

1) 관련 조약 규정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2006. 6. 30. 국회 비준동의, 2006. 7. 4. 발효)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한·중 조세조약만을 근거



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등 관련 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등에서 여전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서 한·중 조세조약이 직접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부분

1) 관련 법령

■ 개정 전 지방세법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 분 법인세 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5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2014. 1. 1. 제12153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2) 관련 법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



게 변경되고, 원인행위의 완료로 종전 규정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호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개정 전 지방세법은 제85조, 제89조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세방식을 표명하고, 달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5조 등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등과 같은 법인세액을 감면하는 규정과 결합하면, 법인세의 감면 규정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이 감면되어 결과적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위 개정 전 지방세법 조항은 법인세액 산정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와 이 사건 연구비 등 공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등과 일체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정한 '종전 규정', 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할 때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문언상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정한 '종전 규정'에는 감면 규정 뿐 아니라 부과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가세방식의 부과 규정을 위 종전 규정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독립세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부가세방식



의 종전 규정보다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었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4. 1. 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존재하던 세액감면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들로서 지방소득세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되도록 하였을 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지방세법 개정 이전인 2013년까지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지출하여 법인세에 대해 그에 관한 이월 세액공제를 하면서 부가세방식을 통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가, 독립세방식의 개정 지방세법으로 인해 이월 세액공제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의 위와 같은 개정은 원고에 대해 종전 규정의 불리한 개정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개정 전 지방세법 적용 당시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원인 행위를 완료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정한 최저한세액의 제한 규정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모두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정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도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32조, 제144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이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은 개정 지방세법의 독립세방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연구비 등 이월공제에 있어서는 법인세 공제세액의 10%만큼 법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을 정하는



등 종전 규정에 따른 부가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그 납부 시기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인 2014년도이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원인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32조, 제144조 등과 결합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연구비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액 중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연구비 등에 관한 부분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정당세액 초과분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9

재판장 판사 고○○

판사 박○○

판사 김○○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 세 표 준	세 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억 9천 800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억 5천 800만 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



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1조(신고납부)

-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
분의 1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6[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의2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



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text{분의 } 20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cdot \text{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text{분의 } 2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 \cdot \text{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times 2\text{분의 } 1$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에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끝.